

第147回國會 (閉會中)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政治 會議錄 第35號
 權力型非理調查特別委員會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12月30日(土)
 場 所 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連席會議運營에 관한委員長幹事會議結果報告
2. 特委告發의件
3. 其他事項

審査된案件

1. 特委告發의件 1面
2. 其他事項 5面

(17時31分 開議)

○委員長 黃明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第35次委員會를 開催하겠습니다.

1. 特委告發의件

○委員長 黃明秀 먼저 오늘 여러분들한테 案件 上程할 것은 1項의 連席會議運營에 관한委員長幹事會議結果報告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傳聞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아직도 幹事會議가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차후로 報告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한테 一任 해주었으니까 이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둘째번으로 特委告發의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日程 第2項에 지금 上程한 대로 2項은 領袖會談 合意發表에 의하면 5共清算을 年內에 완전히 종결시키고 3野黨 總裁는 李源祚씨에 대하여 特委를 통해서 告發키로 했다고 發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3野黨뿐만 아니라 領袖會談에서 완전히 靑瓦臺에서 합의한 이러한 事件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當 特委에서 이 告發의件을 年內에 처리하여야 할 事案이고 그 동안 全斗煥 前大統領證言問題로 여러가지 바빠서 이제야 이 件을 上程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李源祚씨에 대해서는 그 동안 當 特委調查過程에 있어서 今年 3月29日의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 또 聽聞會의 證人으로서 出席할 것을 今年 3月3日 出席要求書를 發送

한 바 있습니다. 당시 3月27일부터 29日까지의 2次 不實企業聽聞會의 證言出席要求한 證人 17人中 14人이 海外旅行 등을 이유로 해서 出席할 수 없다고 通知해 와 同 不實企業聽聞會는 3月27日 全體會議 決議에 의하여 無期限 延期되었고 그 사실을 當事者들에게 通報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李源祚씨에 대하여는 國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不出席 등의 罪는 成立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論議하고자 하는 李源祚씨 告發問題는 當 特委 調查過程에서 나타난 犯罪嫌疑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 刑事訴訟 訴訟法에 의하여 告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委員長은 여러 委員님들에게 配付해 드린 油印物과 같이 當 特委 調查過程을 통하여서 관계 證인들이 證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告發狀 文案을 作成해 보았습니다.

그 告發事實의 要旨는 다음과 같습니다.

告發內容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不實企業整理 關聯非理와 石油事業基金造成 및 運用上的 非理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不實企業整理와 관련한 非理에 대하여 보면 1989年3月16日 및 3月17日 兩日間에 있었던 不實企業聽聞會에서 權哲鉉證人은 聯合鐵鋼 引受者 決定 과정에서 李源祚씨가 不法 介入하여서 東國製鋼에 引受시켰다고 證言하고 있으며 尹錫祚證人은 大韓船洲를 韓進海運에게 引受시키는 과정에서 不法 介入하여 1,000億

상당의 政治資金 造成을 시도했다는 등의 非理가 있었다고 證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要求한 내용으로서 하고 그 不實企業 정리과정에 있어서의 引受者 選定 또 引受節次 과정 引受企業에 대한 特惠的 金融支援과 관련해서 犯法의 의혹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銀行監督院長으로서의 責任을 물어 告發하고자 합니다.

委員長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告發 사실로 李源祚씨를 當 特委 決議를 통해서 檢察에 告發할 것을 提議하고자 합니다.

여러 委員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盧武鉉委員입니다.

지금 나누어 주신 告發狀 내용을 급하게 읽느라 내용을 충분히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충분히 告發內容 사실을 檢討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本委員이 5共特委 委員으로서 특히 不實企業 部分에 관한 조사를 하는 小委員으로서 조사에 참여했던 바에 의하면 방금 委員長님께서 지적하신 몇가지의 犯罪事實 部分에 관해서는 아직 조사가 미진한 것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調查過程이 미진했고 적어도 國會가 國會의 行爲로서 告發을 하려면 상당한 조사를 좀더 한 다음에 사실이 더 확정되고 그렇게 해야 告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本委員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은 告發動議案이 제출된 것은 지난 12月15日의 靑瓦臺 與野領袖會談의 政治的 合意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조금 미흡하지만 告發을 해야 하는 것으로... 告發이라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그런 必要性에 의해서 이런 動議案이 제출된 것이라고 봅니다.

本委員으로서도 5共清算이라는 이 말이 歷史의 當爲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동안 現實的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政治的 狀況위에서 너무 오래동안 結論없이 政治的 公방만 계속하는 동안에 우리 國民들이 이제 지친 나머지 뭔가 매듭이 지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現

實的 필요에 의해서 이와 같은 政治的 決斷을 내린 점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수긍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렇게 政治的으로 매듭을 지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고 法治主義의 原則이나 기타 民主社會에서 지켜야 될 高유의 가치는 훼손함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저 法治主義라는 것은 權力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또는 權力의 자의적인 남용으로부터 國民의 基本權을 보장하자는 데에 그 基本精神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의무는 주로 權力을 향해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法治主義라는 말이 數十年 人類의 歷史속에서 法은 있어 왔으며 法治主義라는 말은 法 있고부터 바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法治主義란 말이 생겨난 것은 18세기 近代自由主義가 社會의 公認된 통념으로 자리잡을 때부터 法治主義란 말이 쓰여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權力이 法의 統制를 받게 될 때부터 생겨난 말입니다. 그러나 특히 權力은 法을 더욱더 어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法을 어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政治史를 돌아켜보면 政權을 잡은 사람들은 統治行爲라는 이름하에 은근히 脫法的 行爲를 저질러왔고 누구는 法을 어겨도 좋다고 미리 허가해 주기도 하고 누구는 法을 어겨도 統治行爲란 이유를 내세워 전혀 아무런 法的 조치없이 넘어가기도 했고 이런 歷史가 오늘처럼 이런 불행한 歷史를 낳았고 5共特委라는 이런 委員會를 만들게 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제 野團까지 野黨 政治人까지 政治的타협이라는 이름하에 法治主義의 원리를 파괴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特委를 운영하는 것도 法의 존엄성을 확립해가자는 것이지 적당하게 政治的으로 필요할 때는 法을 짓밟아도 좋다는 先例를 남기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쳐다볼 때 우리 國會의 行爲 또한 일정한 國會의 議事와 行爲 또한

일정한 適法性和 正當性を 확보할 때만 그것이 國會의 行爲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適法性和 正當성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國會의 行爲로서 正當성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告發이 論議되고 있는 이 事件을 쳐다보면 전혀 혐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할만한 그런 심증은 가는 것이지만 國會가 告發이라는 행위를 할 단계에 이를만한 충분한 調査가 이루어진 바 없고 그 調査結果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우리 特委委員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國會의 行爲는 歷史에 남을 행위로서 일정한 권위와 正當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國會의 告發은 하나의 政治的 行爲일 뿐이지 適法性和 正當성을 갖춘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 實效性에 있어서 볼때에 지금까지 檢察이 5共非理에 관련된 搜查를 하고 그 搜查結果를 發表한 바에 의하면 전혀 國民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檢察에게 國會가 절차도 제대로 다 갖추지 못한 미흡한 상태에서 허겁지겁 정치적 방편으로 告發해서 檢察이 적당하게 무마시켜 버리면 이것은 우리 本 特委가 또 하나의 정치적 흥정과 國民을 속여 나가는 과정에 협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檢察이 조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檢察의 책임으로 남을 것이고 그것은 國民들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왜 國會까지 거기에 함께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特委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말하면 부득이한 정치적 합의라 한다 할지라도 이 정치적 합의에 따르는 國會의 권위실추는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그것은 없는 쪽으로 정치적 합의를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免罪符를 부여하는 이런 要式節次에 國會가 들러서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되고 후세에 웃음거리가 됩

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告發動議案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黃明秀 다음 林委員 말씀하세요.

○林春元委員 林春元委員입니다.

지금 盧武鉉委員께서 상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 告發狀을 지금 이자리에 와서 봤는데 과연 告發狀이 정당한지 과연 적법한지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告發狀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告發의 실질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 효력도 없는 告發을 우리 5共特委가 남발함으로써 과연 우리 國會의 권위에 스스로의 실추를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하는 문제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대단히 당혹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內容을 대충 보면 李源祚씨가 檢察에 가서 既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 조사받은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또 告發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전까지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本委員으로서는 대단히 이 告發狀에 대해서 다른 어떤 告發의 내용이 없는지 자세히 이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조사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외에도 많이 있을텐데 왜 다른 것은 다 빼고 이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얘기는 해 주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委員長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秀 댜 말씀 안 계십니까? 姜信玉委員 말씀하세요.

○姜信玉委員 지금 盧武鉉委員이나 林春元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현재 우리가 國會5共非理調查特別委員會에서 會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告發의 문제는 領袖會談에서 年內로 告發하자는 합의를 다 한 것입니다.

平民黨으로 말하면 金大中總裁가 합의를 했고 우리 黨에서는 金泳三總裁가 했고 또 共和黨 金鍾泌總裁가 더군다나 告發에 대한 제

안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다 합의가 된 것입니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政治的인 합의에 따라서 할 수 없이 時限에 쫓기면서 오늘 마지막날 告發節次를 밝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要式節次를 밝아서 하는 것입니다. 告發의 내용은 이제 盧武鉉委員도 말했다고 林春元委員도 말했다고 우리가 조사를 충분히 못해서 명백히 有罪證據를 갖춘 告發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소위 혐의를 두고 있는 것 이런 것을 告發하는 것입니다. 告發이라는 것은 범죄사실이 완전히 증명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는 公訴事實 그것을 바로 告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의 단서를 잡아서 이것을 다시 再搜查해달라는 이런 뜻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政治的으로 來年이 되면 다시는 지난날 얘기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대타협을 했는데 5共非理調査委員會에서 이것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추단할 수 있는 비위사실 혹은 범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告發狀에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다 적어놓은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러면 이것이 바로 檢察에 넘겨져서 수사의 단서가 될 뿐이고 이것을 수사하면서 다른 범죄사실도 추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그런 의미에서 告發을 지난 領袖會談에서 합의한 내용을 우리가 具體化시키자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뿐이지 告發狀이 바로 公訴事實과 똑같은 證明力 있는 것을 다 갖춘 것이나 왜 이것만 했느냐 이렇게 말할 그런 때가 아니다 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領袖會談에서 합의한 대로 오늘 이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黃明秀 崔洛道委員 말씀하세요.

○崔洛道委員 姜信玉委員이 말씀하신 것에 대동소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本委員도 이 告發狀을 이자리에 와서 처음 접수를 했습니다. 충분히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충 읽어보고 또 이것을 파악해 보았을

때 충분히 이것이 범죄사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납득하기에는 짧은 시간에 어렵지만 이것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文案을 좀더 문맥을 손질하는 것은 告發人이 다시 작성하더라도 이 내용은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없이 이 문제를 이자리에서 우리가 決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黃明秀 林委員 말씀하세요.

○林春元委員 本委員 역시 告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政治的으로 되어가는 것을 못느낄만큼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자리에 와서 이 告發狀을 들여다 보니까 告發狀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리고 이런 告發狀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것을 告發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告發한 의미를 부여하기에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이미 조사받고 다 끝난 사건을 여기에 적시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秀 盧委員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本委員도 李源祚씨가 무슨 책임이 없다거나 또는 여기에 告發內容된 사실이 심증이 가지 않는다거나 근거없는 일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기왕에 政治的으로 합의해서 이 문제를 끝을 내려고 하면 원칙적으로야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을 갖추어질 만큼 한사람 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함께 조사가 되고 처벌할 일은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政治的으로 이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告發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로 하는 정치적 합의도 부득이한 것이라면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와같이 기왕에 정치적합의로써 문제를 매듭지으려면 大統領이면 大統領답게 자기가 法務部長官에게 지시를 하든지 檢察總長을 불러 지시를 하든지 이것이 與野間에 합의사항이니까 國民들이 납득할만큼 또는 누가 보더라도 政治的으로 與野의 합의가 존중되었다

고 불만쯤 搜查를 하도록 지시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구차하게 이런 고발을 해 가지고 형식을 밟아서 왜 굳이 國會를 갖다가 이렇게 적법한 절차도 갖추지 못하고 기왕해 오던 잘 진행해 오던 特委가 기능이 정지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공전 시켜놓고 할일 없이 해 가지고 國民들이 의혹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실망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또 내일의 證言 절차 또한 많은 논란이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政治圈에다가 부담을 떠맡기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政治적인 합의를 존중하려면은 野黨 議員만 野黨總裁가 참여한 領袖會談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국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있는 大統領이 이런 문제는 고발이라는 아주 미분적이고도 간접적인 형식 그래서 고발한 사람이 세면이 나중에 깎이는 그래서 사람 우습게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을 통하지 말고 책임있게 자기가 搜查를 지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政治적으로 처리하면 될 문제가 아니냐 本質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李聖浩委員 野黨이 먼저 고발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盧武鉉委員 어쨌든 그래서 本人은 그러한 취지에서 이 고발을 反對한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黃明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聽聞會 초창기부터 委員長을 한 것이 아니라 요즈음 갑작스럽게 이것을 말아가지고 여러가지 두서가 잘 안잡히지만 지금 몇분 委員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때 또 일면 그럴싸하게도 들리고 또 일면 이것이 뭔가 어리벙벙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檢察搜查가 89年1월에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檢察이 委員長이 이러한 소리를 해서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지만 솔직한 얘기가 우리 野黨들이 檢察을 못 믿는 것 아니요? 그래서 우리 國會에서 特別 檢事制度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어요. 안되어서 어떻게 檢察에서 일단락 수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不實企業의 聽聞會過程에서 여러분들도 아까 本人이 지적하다시피 여러가지 證人들이 나와서 證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단 말이에요 몇가지가... 이러니까 檢察搜查過程에

서는 일단 끝났지만 證人들이 나와서 여러가지 不實企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李源祚씨가 관여한 이러한 사실들이 많이 나왔다 말이에요.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발하면 아마 이번은 그렇게 가볍게 檢察에서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의도도 있는 것이고 지금 물론 여러가지 法理論으로 많이 말씀했지만 내가 일일이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아러쿵 저러쿵 答辯할 그런 큰 능력도 없고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靑瓦臺에서 이것을 합의를 봐 가지고 오늘 내일까지는 5共을 끝마치자 하는 이러한 입장에 물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이상으로 討論을 마쳐주시고 바로 表決處理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討論終結합니다. 그러면 먼저 告發을 贊成하시는 분 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起立表決)

反對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在籍 25人中 贊成이 16人 反對가 1人 棄權이 9人입니다. 이래서 이 告發案件은 통과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리하여 주신 告發案件에 대해서 告發狀의 文案整理 또 發送에 대하여는 本人에게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겨주시도록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 其他事項

(18時)

○委員長 黃明秀 다음은 其他事項으로 지난 88年8月3日 및 10月5日 두차례에 걸쳐서 特委決議에 의하여 全基煥등 18人에 대하여 出國禁止를 法務部長官에게 요청 그동안 몇차례에 연장 요청해서 내일까지 出國禁止措置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5共濟算 年內終結에 관한 與野 領袖會談 합의정진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出國禁止措置를 더 이상 연장 요청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말씀하세요.

○金東周委員 金東周委員입니다.

지금 방금 委員長께서 내일로서 5共特委의 모든 조사활동이 끝이 나니까 지금까지 5共特委에서 어떤 犯罪事實을 우려해서 出國停止시킨 사람에 대해서 出國解除要請을 해주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로서 5共清算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 特委가 무엇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지금 방금 李源祚씨사건 문제만 하더라도 領袖會談을 존중해 주자 하는 뜻에서 그 내용은 상당히 問題點이 있습니다마는 나는 그래도 政治人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려는 의미에서 동의했습니다.

하나 여기 앉은 與野間에 물론 참 반대하는 委員도 있고 棄權하는 委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委員長께서 어떠한 의미에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出國停止를 解除해 주자고 하고 내일 마치 날짜만 지나면 5共清算이 다 되어버리는 양 하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내일이 역사적인 釜斗煥 前大統領의 證人訊問입니다. 聽聞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國民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 會議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靑瓦臺 領袖會談을 존중은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근 2년동안에 부르짖던 5共清算을 나는 國民으로부터 무슨 야합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5共清算을 마무리했다 하는 國民의 원성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幹事會議에서 협의가 되어가는 과정을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몰라도 저는 幹事會議나 總務會談이나 領袖會談이나 國民이 납득하는 선에서 해야지 國民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補充質疑를 하니 안하니 그러면 證人이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왜 國會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만일에 내일 委員長을 위시한 우리 幹事들이 혹은 政治 지도자들이 職位高下를 막론하고 어떠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歷史를 왜곡시키는 證言을 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다시 한번 結論的으로 방금 委員長께서 지금까지 出國停止시켜놓은 이분들에 대하여 出國解除要請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明年에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秀 다른 분 말씀 듣기 전에 저도 오늘 사실은 우리 5共特委에서 과거에 여차여차한 여러가지 절차에 의해서 오늘 만료... 내일이 만료돼 가지고 이것은 절차상 꼭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서 實務陣에서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나는 그런줄 알았는데 지금 金東周委員님 말씀을 들으니 아주 마땅하고 옳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문제는 여기서 처리하는 것을 일단 보류하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崔洛道委員 發言 주세요.

이것은 보류가 아니라 더 연장할 것이냐 이것으로써 그칠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이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本委員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모든 우리 特委委員들과 협의해서 지시를 시켜 가지고 결정하면 더욱 좋은 일이고 그러기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各黨 幹事間에 협의라도 거쳐서 이 문제가 제기 되었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特委委員長님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전혀 모르고 金東周委員의 말을 들었더니 이것을 다뤄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委員長이 이 會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잘못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委員도 어떠 어떠한 사람을 出國停止시켰는지를 지금 몰라서 專門委員한테 다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전기환 전순환 전우환 손춘지 이규동 이규광 이창석 김상구 홍순두 최정국 이규승 김승웅 황홍식 전경환 그리고 안현태 장세동

조성희 김인배 이렇게 해서 열네분 전두환과 이순자를 뺀 열넷에다가 넷을 보태서 열여덟분이 현재 우리 特委가 出國停止를 요청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特委委員으로서 전혀 지금 기억에 없는데 委員長께서 누구 누구를 이 特委에서 停止要請한 사람을 연장하자는 것인지 또는 이것을 그만 중단하자는 것인지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金東周委員의 발언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이것을 중지시켜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會議進行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보좌를 못한 직원도 문제가 있지만 委員長께서도 문제의 파악을 좀더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내일 全斗煥 前大統領이 證人으로 나와서 證言하는 문제가 모든 것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出國停止를 더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연장할 것을 결의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黃明秀 좋습니다.

내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아서 안됐지만 나는 솔직한 얘기가 여러 가지 領袖會談에서 今年내에 5共을 마무리한다 매듭을 짓는다 여기에 하나의 뭐랄까 강박관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인식이 돼서 내일이 今年 89년의 그믐날이기 때문에 31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머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이것 이렇게 당장 급한 일도 아니고 하니가 지금 崔洛道委員께서 말씀한대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또 검토할 시간이 내일로 안 끝나면 내일 바로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것을...

○崔洛道委員 오늘 이것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全體會議을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것을 결의해주고 가야 됩니다.

○委員長 黃明秀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瑕疵 있게 안할테니까 이 문제도 委員長이 4黨幹事와 협의해서 처리할테니까 그렇게 맡겨 주세요.

그러면 기타사항으로서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兩 特委의 委員長과 幹事 여

덟분 해서 열분이 오늘 방금전까지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마무리 안됐지만 일부 委員께서 그간에 幹事와 委員長 連席會議에서 대충 합의한 사항 또 아직도 미진한 사항 이런 문제에서 저한테 기를 하면 얼마나 이러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때문에 아까 第1項을 아직 全體的으로 완결이 안돼서 報告를 못해 드린다고 했는데 대충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4次 委員會에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이것을 맡겨주셨는데 兩特委 幹事會議에서 대충 결정된 것이 補充質問은 重續會談 합의한 대로 5共과 光州 兩特委를 連席會議하는 데에서 各黨 한분씩 네분이 質問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또 그후로 補充質問을 하는 것은 구두로 하는 것이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나 시간을 몇 분을 하는 것이나 이 문제는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

또 全斗煥 前大統領이 國會에 나와서 선서를 하는데 그냥 서면으로 선서서에다가 소정 법률의 양식에 의해서 날인만 해서 그냥 委員長한테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서 가지고 본인이 宣誓書를 낭독하고 委員長한테 내느냐 이 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미진했지마는 그 時間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4時間을 잡고 거기서 食事時間을 3時間을 빼고 또 2時間마다 10分씩을 휴식을 하면 約 4時間이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時間을 가지고 5共과 光州問題를 어떻게 배려하느냐 그것은 答辯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질치는 5共特委委員長이 午前中 또 午前中이 될는지 午後까지 같은지 모르지만 먼저 司會해서 全斗煥證人이 와서 宣誓를 5共特委委員長한테 하고 書面을 두 부를 宣誓書를 작성해서 한 부는 光州特委委員長이 光州問題를 진술할 때 光州委員長한테 내기로 즉 5共에 관한 事項을 訊問할 때는 證言할 때는 5共委員長이 司會를 보고 光州問題를 證言할 때는 光州委員長이 司會를 보고 이렇게 해서 司會를 보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補充質疑는 누가하느냐 말이에요. 補充質疑는 5共과 光州特委에 네분인데 各黨

에서 한분씩... 여기는 한분씩 나오니까 光州問題 5共問題를 이것을 혼합해서 質問해야 되겠는데 그럼 이때 司會는 5共委員長이 보는 것이나 光州委員長이 보는 것이나 이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곧 이 會議가 끝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議事進行發言은 이렇게 했습니다. 議事進行發言은 會議進行하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4黨幹事가 모여서 4黨幹事合意가 아니라 協議下에 合意하면 넷이 하면 혹시 어느 黨에서 하나만 反對해도 안되니까 協議下에 委員長한테 요청하면 委員長이 議事進行發言을 주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座席配定... 조그마한 이야기이지만 이 座席配定은 國會 本會議에 현재 各黨의 議席을 配席한 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여타 부분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저희들이 알아서 모든 절차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만일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東周委員 會議時間 延長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黃明秀 會議時間 延長 문제는 사실은 1회 證言인데 우리 野黨側에서는 1회 하면은 125문항에 대해서 1번서부터 125문항까지 한번씩 증언하는 것이 1회 아니냐 그런데 民正黨側에서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1회 證言이라는 것은 즉 1일이다 1일이라는 것은 아침 10시에 會議를 하면 12時면 그게 1일로 취급한다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불과하다고 하지만 대충 어떠한 합의에 100% 합의는 아니지만 서로 양해사항이므로 前職 大統領이 정정당당히 國會에 나와서 證言을 하기 위해 나오는 데 어떤 사항이 몇 개 남았다고 해서 補充質問을 해가지고 答辯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고 반시간이고 더 걸리는데 그때 시간이 열두시다 이럴때 나는 열두시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겠다고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이 분이 그것을 알아서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與黨側에서는 그때 또 4黨幹事가 모여서 상의 한번 해보자 하는 이것도 委員長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答辯이 한 시간이나 반시간

남았는데 證言하러 나온 분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열두시가 넘어도 나는 충분히 證人이 알아서 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런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東周委員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가 조금 곤란한 것이 원래 民正黨과 特委委員長께서는 같이 會議를 잘 안해 봐서 그러는데 보통대는 사람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원칙만 주장하는 것이 존경하는 民正黨委員들의 지금까지의 전례입니다. 이런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당한 일이 있습니다. 鄭周永씨 證言을 했을 때... 우리가 國會法에 의해서 당연히 前職 大統領이라 하더라도 宣誓는 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이런데 鄭周永씨 같은 경우 證人은 만일에 우리가 밤 열두시가 경과되었을 때 證人의 同意가 없을 때는 못한다 이래가지고 鄭周永씨가 會議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저는 생각할때 1회 證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事件에 쏠斗燒씨가 여기 한번 나오는 것이 1회 지나는 그날 하루를 1회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해석을 여기서 명확히 결정해야지 만일에 솔직한 이야기로 성실한 答辯을 한다면 한시간에 끝날 사항이지마는 答辯이 성실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지금 상당히 믿기가 어렵네요. 이런 마당에서 열두시 되고 난 이후에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해서 特委가 더 모양이 나쁘게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일 밤을 새우더라도 지금 더군다나 5共이나 光州合同連席會議에서 완전히 國民이 납득할 수 있는 答辯을 받아낼 때까지 며칠 걸리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委員長에게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梁性佑委員 제가 委員長님께 분명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어떻게든 쏠씨 證人의 證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證言 듣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상 特委委員들의 의사가 전면적으로 반영이 안된 점은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國會運營에 있어서 問題點이 분명히 크다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긴 이야기는 삼가하겠습니다마는 내일 補充質問에 있어서 口頭質問 더욱이 一問一答式의 口頭質問 이 방법이 채택이 안 된다는지 또 금방 지금 論議한 시간연장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委員들의 의사가 전면 부정되어서 어떤 問題點을 일으킨다는지 또는 宣誓의 方法 證人이 聽聞會에 나와서 당연히 宣誓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國會를 무시한 어떤 조치가 있다는지 등등 이런 補充質問의 方法이라든지 宣誓의 方法이라든지 시간에 있어서 問題點이 발생하거나 또 분명히 議事進行發言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즉 요구하는 委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제재하는 일이 있다는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내일 쉰씨 證人의 本會議는 원만하게 열리지 못하리라는 것을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秀 감사합니다.

지금 梁委員이 참 좋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 野側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의분! 이거야 지금 靑瓦臺의 合意事項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했던 大妥協을 한 것이예요. 했는데 우리 幹事나 委員長한테 맡겨두고 지금 썩기를 박아두는 것은 來日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梁委員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梁委員님의 그런 충정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여기 幹事분이 계신데 幹事분! 잘 들으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내려가서 합의할 때는 그런 것을 잘 주지하시고 협의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더 이상 무슨 또 말씀이 있습니까?

○金東周委員 委員席에 「마이크」는 준비가 됩니까? 그것 좀 答辯해 주세요.

○申五滋委員 아까 委員長께서 會議에 들어 오시기 전에 말씀을 해서 든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政治團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나 妥協이나 大妥協이나 合意라는 것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同僚委員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委員長이 지적한 대로 宣誓의 방식이라는 것은 證言鑑定法의 第8條에 분명하게 刑事訴訟法의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合意나 妥協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는 前職大統領禮遇라고 해서 法에 없는 그런

식의 合意나 결정에는 會議進行을 위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委員長 黃明秀 감사합니다.

金 炫委員 말씀하세요.

○金 炫委員 幹事로 들어갔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의분 아니라 열불 아니라 自決을 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으로 어느 날서부터 말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申委員이나 또 나머지 委員들의 말씀하신 것 野3黨으로서 그것 이상으로 거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결과적으로 領袖會談에서 내일 그것을 하자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끌어 나가기 위한 것이지 지금 委員長님 말씀대로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할 수 없는 타협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한 個를 양보해주고 아홉 個를 얻어 낼 수 있을 때 그것을 해야지 무슨 幹事들 껌대기로 가서 앉아 있는 것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서 모양새가... 내일인데 무슨 누구 편 들어주고 여기 야합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명색이 나도 初選이라 다음에 또 해봐야 될텐데 야합할 일 없어요. 걱정들하지 말고 맡겨주십시오. 그정도 證鑑法8條 모르는 사람 없고 그 이상 다 따져봤고 宣誓 하나 가지고 세시간씩 지금 싸웠고 다 했어요. 열불 나요. 맡겨주시고 지금 幹事들께서 기다립니다. 타협해야 내일 會議하지요.

○委員長 黃明秀 그럼 마지막으로 朴相千委員 한번...

○朴相千委員 다른 절차에 대해서 委員長과 幹事에게 위임했으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宣誓에 대해서는 國會에서의 證言鑑定에 관한法律에 刑事訴訟法의 規定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刑事訴訟法 規定을 제가 읽겠어요.

○委員長 黃明秀 다 알아요.

○朴相千委員 다 알아도 좀 들으십시오.

宣誓는 宣誓書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宣誓書에는 이러 이러한 말을 해야한다. 裁判長은 證人으로 하여금 宣誓書를 낭독하고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證人으로 하여금 宣誓書를 낭독하도록 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國會에서의 證言·鑑定에 관한法律에 違反해서

타협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이 점을委員長과 幹事の 協商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드립니다.

○委員長 黃明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저희들이 잘 새겨서 앞으로 남은 會議를 進行할 것이고 여러분 드디어 來日 10時부터 全斗煥證人이 나와서 證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돌아가서 많은 研究를 하시고 來日다시 만나는 것을 기약하면서 35次 會議를 이것으로 散會합니다.

(18時27分 散會)

○出席委員

黃 明 秀	金 仁 泳	金 重 權
金 顯 煜	朴 進 球	徐 廷 華
辛 再 基	安 秉 珪	李 聖 浩
張 慶 宇	趙 庚 穆	洪 熙 杓
黃 炳 禹	黃 潤 鎰	金 令 培
朴 相 千	梁 性 佑	李 東 根
林 春 元	趙 昇 衡	崔 洛 道
姜 信 玉	金 東 圭	金 東 周
盧 武 鉉	沈 完 求	金 鍾 植
金 炫	申 五 澈	鄭 一 水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趙 在 錫
立 法 審 議 官	崔 再 喆